

경운대학교 연계·융합전공교육위원회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연계·융합전공교육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또는 심의한다.

1. 연계·융합전공 신설 및 폐지
2. 연계·융합전공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주요사항
3. 연계·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4. 학제 간 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교무처장, 각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 주임교수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우리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회무를 통괄한다.

③ 위원회의 회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교무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.

④ 연계·융합 전공별로 교육과정 구성, 효율적인 학사운영, 학생 선발 및 학생지도 등의 중요한 사항을 연구 심의하기 위하여 전공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
제4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은 보직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회의 소집) 회의는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6조(의사 및 결의)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.

제7조(결의사항 조치)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총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연계·융합 전공별 운영위원회 구성) ① 운영위원회는 각 전공별 참여 학과 전임교원 중에서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전공별 운영위원회는 해당 연계·융합 전공의 주임교수를 위원장으로 한다.

③ 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.

④ 각 운영위원회는 연구·심의한 주요사항을 연계·융합전공 교육위원회 회의 시 보고 및 부의 하여야 한다.

제9조(행·재정 지원) ① 연계·융합전공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등에 따른 예산을 책정할 수 있으며, 매년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각 연계, 융합전공별 주임교수에게는 수당 지급, 책임시간 감면 및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, 지급액 및 반영 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0조(사무)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처에서 관장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